

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(오세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63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7. 22.

발 의 자 : 오세희 · 김우영 · 민병덕
박지원 · 박희승 · 서미화
양문석 · 어기구 · 이개호
이용선 · 이소영 · 이훈기
정진욱 · 황명선 의원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와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 · 대여 · 배포하는 행위,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 · 고용, 청소년 남녀 혼숙 등 풍기문란 영업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그 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청소년이 신분증 위 · 변조나 도용 또는 폭행 · 협박을 통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출입하는 등의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고, 이 경우 선의의 피해자인 업주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청소년이 신분증 위 · 변조나 도용 또는 폭행 · 협박을 통해 업주로 하여금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였거나 확인하지 못하게

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유해약물 판매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더라도 그 처벌을 감경·면제하는 등 소상공인을 억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63조).

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3조의 제목 중 “감경”을 “감경 또는 면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58조제1호·제3호·제4호·제5호(제30조제8호의 위반행위에 한정한다) 및 제59조제6호·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청소년이 위·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그 행위자로 하여금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한 사정 또는 행위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면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형의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적용례)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58조제1호·제3호·제4호·제5호 및 제59조제6호·제8호의 죄를 범하여 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계속 중인 사건에

대하여도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3조(형의 <u>감경</u>)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63조(형의 <u>감경 또는 면제</u>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② 제58조제1호 · 제3호 · 제4호 · 제5호(제30조제8호의 위반행 위에 한정한다) 및 제59조제6 호 ·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청소년이 위 · 변조 또는 도용 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그 행위 자로 하여금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한 사정 또는 행 위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 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 게 한 사정이 인정되면 그 형 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.